

### ◎ 한국 IPG의 활동

- 서울에서 제24회 한국 IPG 세미나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재 전략'을 개최했습니다 01
- 2019년도 권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05
- 일본 특허청 심판부 '심판실무자연구회' 보고서 소개 05

### ◎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6
- 「신 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7
- 한국의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 한국의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해



###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3년간, 한국IPG사무국에서 활약해 온 하마키시 부소장님이 6월말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후임으로 일본 특허청에서 츠치야 부소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IPG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퀴즈를 맞춰봅시다!

한국특허청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요?

- ①미국·캐나다    ②캄보디아·라오스    ③브라질·칠레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한국 IPG의 활동

## 서울에서 제24회 한국 IPG 세미나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재 전략’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해외 사업 전개와 더불어, 기업들은 특허·상표·디자인(의장)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지재 전략을 수립한 후 해외 출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는 각국의 출원 동향 등을 통하여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재 전략을 해석하기 위해 2020년도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재 동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JETRO 한국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korea-ip>)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에는 제24회 한국 IPG 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사업)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위 사업에 참여했던 한양국제특허법인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글로벌 기업의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서 중국의 지재 소송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 ◎ 한국 글로벌 기업의 특허 동향

- 강석훈 한양국제특허법인 변리사

#### · 삼성전자의 특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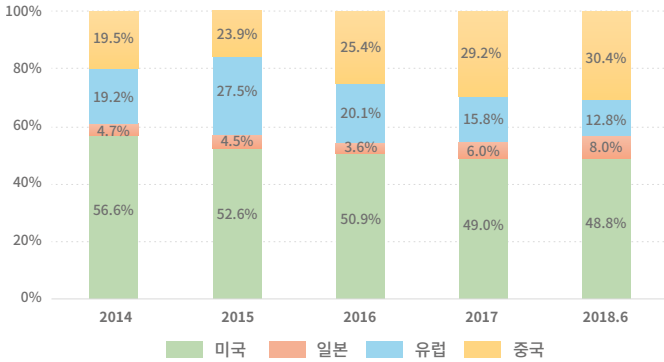
#### 해외 출원중 중국 출원 비중이 증가 추세

조사 대상 국가(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모두 특허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출원의 감소 폭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의 지재권 확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분야의 출원 건수가 급증하는 한편, 이동·정보기기 분야의 출원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과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반도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IPG의 활동

삼성전자 해외 출원 국가별 출원율



(출처)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JETRO에서 작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

한국 특허 출원의 95% 이상이 해외에 출원됩니다. 국내 출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출원의 해외 출원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해외 출원 루트는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직접 출원)이 아직도 PCT 출원(국제 출원)보다 많지만, PCT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원의 경우,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기반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출원 건수는 한국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 유지 건수는 한국 31,520건, 미국 56,364건으로 미국이 월등히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출원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분야의 출원 건수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LCD나 LED 등 전통적 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은 감소하는 한편, QLED나 홀로그래프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이 급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LG전자의 특허 동향

신기술분야의출원이 증가 추세

한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해외 출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에 출원하는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휴대전화 실적 악화를 반영하듯 조사 대상 국가 모두 이동·정보기기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5G 기술 등 통신 시스템 분야 관련 출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에 따라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로봇, 전장(電裝), 전자, 발전 시스템,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관련 출원이 각국에서 급증하는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체질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출원비중이 감소

한국에서만 특허 출원을 하는 비율은 2017년에는 52.4%이었으며, 전체 출원 중 해외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해외 출원 루트는 PCT 출원이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출원하는 특허 중 한국을 기반으로 한 우선권이 약 55%,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가 약 44%로 한국 출원 없이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특허 동향

전지분야출원비중이 증가

전체 특허 출원 중 해외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만 출원하는 비중을 웃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석유화학 분야는 감소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 성과도 있었으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전지 분야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 국가 중 중국과 유럽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중국 출원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동차용 2차 전지와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외 특징으로서 미국의 경우 다른 조사 대상 국가에 비해 장기간 특허를 보유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특허 동향

PCT출원활용비중이 현저히 낮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에 비해 PCT 출원 활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타깃으로 삼은 특정 국가에 특화된 기술을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등록된 특허 유지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 특허에 비해 해외에 등록된 특허 유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특허의 경우 유지 기간이 짧으며 해외 특허의 경우 장기간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출원 중 우수한 특허를 선별하여 해외에 출원한 후 관리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 분야(자율주행 관련 분야가 대부분)의 출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특허 동향

해외출원중중국출원비중이 압도적

전체 특허 출원 중 우선권을 통한 해외 출원 비율이 낮아서 아직은 국내 지재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PCT 출원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해외 지재권 확보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사항으로서 해외 특허 출원 중 중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또 해외 출원 대부분이 PCT 출원이며, 각국의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출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조제품 분야에서는 전기장판 분야의 출원 건수

가 가장 많으며 스테인리스강, 강재(鋼材), 용융 아연 도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한국 글로벌 기업의 디자인·상표 동향

- 이지영 한양국제특허법인 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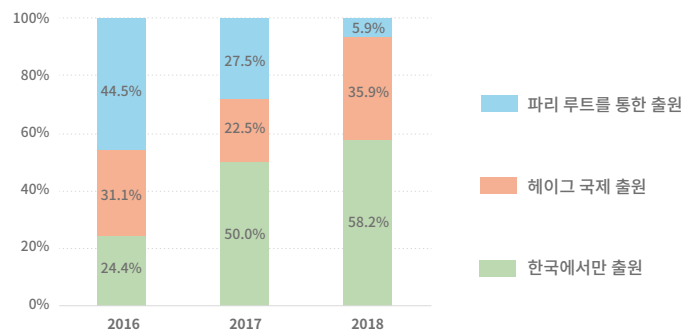
#### · 삼성전자의 디자인 동향

##### 헤이그 국제 출원을 활발하게 이용

삼성전자의 디자인 제품군은 주로 가전 기기와 이동·정보기기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한국 출원 건수를 살펴봤을 때, 2014년에 가전기기가 488건, 이동·정보기기는 650건이었으나 2018년에 각각 194건, 349건으로 감소하였고, 미국 출원은 2014년에 가전기기가 472건, 이동·정보기기가 583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102건, 20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해외 출원 루트는 헤이그 국제 출원(국제 디자인 출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 ~ 2019년 기간 동안의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인 중 삼성전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가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인 출원 루트 활용비율



(출처)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JETRO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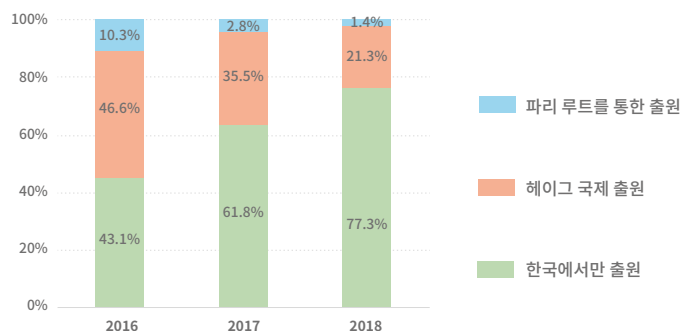
#### · LG전자의 디자인 동향

##### 가전기기 출원이 주류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제품군이 가전기기와 이동·정보기기로 나뉩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이동·정보기기보다 가전기기와 관련된 디자인 출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디자인 출원을 살펴보면 2014년 가전기기는 379건, 이동·정보기기가 277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각각 350건, 162건이었으며, 유럽의 디자인 출원을 살펴보면 2014년 가전기기는 174건, 이동·정보기기가 261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각각 184건, 102건으로 이동·정보기기 출원 건수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또 디

자인 출원 루트의 비율을 보면 2018년에 한국에서만 출원한 경우는 70%가 넘고 해외 출원은 헤이그 국제 출원을 많이 활용한 한편,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은 점차 이용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LG전자 디자인 출원 루트 활용 비교



(출처)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JETRO에서 작성

#### ·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동향

##### 중국 출원은 급증 일본 출원은 급감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318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건수가 271건이었으므로 2018년에는 한국보다도 중국에서 더 많은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0건, 2018년에는 1건으로 디자인 출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해외 출원시에는 헤이그 국제 출원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 · 한국 글로벌 기업의 상표 동향

상표 출원이 많은 한국기업 ①CJ(CJ제일제당, CJ E&M, CJ대한통운 등 다수의 계열사 보유) ②LG생활건강(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 ③아모레퍼시픽(주로 화장품 판매)을 분석해보면 한국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해외 출원은 중국에서 낸 상표 출원 증가가 눈에 띄며 기타 주요 국가(미국, 유럽, 일본)로의 해외 출원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CJ의 경우 2018년 주요 국가에 출원한 상표 건수가 중국 125건, 미국 45건, 일본 13건, 유럽 7건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한국에 상표를 출원한 건수가 2014년에 1,888건에서 2018년에 1,387건으로 감소했으나 중국에 상표를 출원한 건수는 동기간 중 92건에서 3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에 중국 출원이 201건, 미국은 37건, 일본은 27건, 유럽은 0건으로 중국에 집중적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기 상표 관련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에는 소극적이어서 디자인 관련 한국 글로벌 기업들이 헤이그 출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 한국 기업의 중국 지재권 소송 전략

— 한영호 리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지재 관련 소송은 증가

#### 활 전망

중국에서는 예전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이전에는 피고에게 배상금을 받는 일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특허침해 소송은 업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관련 시장을 서로 차지하고자 경쟁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지재 소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지재권 침해에 의한 분쟁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니즈로 인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 브랜드 등과 관련된 지재 관련 소송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며, 예를 들면 K-방역 관련 기술, 제품 및 브랜드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 기업 간의 다양한 분쟁 발생이 예상됩니다.

#### 사례 소개 ① 피고 선택 시 유의점

2014년 중국에서 있었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 ATM기 관련 특허 소송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ATM기를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했는데 일본 기업이 베이징시 제3 중급법원에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과 한국 본사를 피고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일본 기업은 피고를 선택할 때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특허법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행위는 중국 국내에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이 건에 대해서 한국 본사의 행위는 앞서 말한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발 양보하여 한국 본사가 중국법인과 공동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침해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를 피고로 선택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 사례 소개 ② 내용증명 발급은 신중하게

중국 허베이성에 소재한 모 중국계 자동차 제조사는 SUV를 출하했는데 출하한 SUV의 디자인이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SUV 디자인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일본 제조사 SUV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 판매 실적도 양호했습니다. 한편 일본 제조사는 이미 이 디자인으로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제조사는 중국 법률사무소를 통해 중국 제조사와 기타 여러 대리점을 상대로 권리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제조사는 스자좡시 중급법원에 권리불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개월 후 일본 제조사는 중국 제조사를 상대로 베이

징시 고급법원에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은 본건의 디자인권 침해소송과 권리불침해확인 소송을 전부 허베이성 고급법원이 관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국 제조사는 일본 제조사가 내용증명서를 남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허베이성 고급법원은 1심에서 중국 제조사의 SUV는 일본 제조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일본 제조사가 명확한 근거없이 중국 제조사 대리점에 다수의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린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 일본 제조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 한국의 최신 지재상황과 한국 IPG의 활동

— 하마기시 히로아키 (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현) 일본 특허청 심사제4부 영상시스템(정지 화상) 실장

### 한국 특허청이 시행한 코로나 19 대책

#### ① 코로나 19 대응 지재권 지원 태스크

##### 포스(TF) 구성(2월 28일)

피해 기업에 지재권 담보 용자를 우선적으로 시행, 특허 공제사업 부금납부 유예, 코로나 19 관련 조사·심판을 신속하게 실시, 해외 지재권 모니터링,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② 코로나 19 대책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개통(3월 19일)

코로나 19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조사 결과, 여러 가지 제안, 우수 발명 아이디어 접수, 피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

#### ③ 서류 제출 기간 직권 연장(3월 31일)

서류의 제출 기간 만료일이 3월 31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한 안건의 기한을 4월 30일로 연장하고 추가로 5월 31일까지 재연장을 실시했습니다.

#### ④ 심사관 채용을 전년 대비 50% 이상으로 확대(4월 30일)

신규채용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반 공직 공무원 6급(심사관)'의 경력 채용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한국 특허청이 3월 11일에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①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솔루션 개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를 설치하여 정부·민간의 요구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 ②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조성

약 2,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 직접투자 지원에 활용



합니다.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하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 부담을 줄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③ 지식재산으로 수출기업 보호 강화

중국·ASEAN 등에서 침해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 2019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한국IPG는 서울재판클럽(SJC)에서 매년 애로사항 등을 정리해 한국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지식재산분야에 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지식재산분야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6개 항목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2019년도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한국정부의 답변

건의 번호	건의내용	신규/계속
10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의 답변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의 장기화 (현행 거절이유통지 답변기간은 재외자라도 2개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30일 (연장 가능))	【일부수용】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출원인의 편리성 향상, 주요 국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30일을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장기검토】 거절이유통지의 답변 지정기간 연장은 심사처리기간의 지연 및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11	특허법 조약(PLT)의 조기가입 (지정기간 경과 후의 연장신청 또는 영여 이외의 외국어 출원이 인정되도록 PLT의 조기가입을 요청)	【장기검토】 PLT의 주요사항은 이미 특허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가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음
12	수출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화 (특허법에 ‘수출’을 실시행위에 포함하여 제조, 양도 등과 동일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	【장기검토】 향후 산업계로부터 개정요구 또는 수출행위에 관한 분쟁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13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 (통상실시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요청, 2015년에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폐안됨)	【장기검토】 2015년에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폐지된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 도입은 산업계의 우려 등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14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에서의 외국 임상시험 기간에 대한 가산, 보완기간 산입(2012년부터 계속 건의), 심판단계에서의 연장기간 보정절차 (신규) (해외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그 임상시험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산정에 가산해 줄 것 등 요청)	【미수용】 외국 임상시험은 한국에서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는 허가신청자에 있으므로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연장등록에 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중에 연장기간을 보정하는 것은 출원에서 일부 가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 전체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출원 일체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15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Patent Linkege)의 문제점 (판매금지 처분의 제외사유 삭제) (약사법 제50조 6 제1항 각호의 판매금지 처분의 제외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의 삭제를 요청)	【장기검토】 제도의 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는 개선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다수의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 측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조기의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건의사항 답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재판클럽 SJC 알림

<http://www.sjchp.co.kr/notice/list.do>

## 일본 특허청 심판부 ‘심판실무자연구회’ 보고서 소개

일본 특허청 심판부는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입장이 다른 실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결과 판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심판실무자연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URL를 통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www.jpo.go.jp/e/resources/shingikai/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l](http://www.jpo.go.jp/e/resources/shingikai/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l)

【일문】

[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l](http://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l)



정답은 @번 캄보디아 · 라오스입니다. 캄보디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 라오스는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JETRO 한국 지체 홈페이지 2020년 6월30일자 지식재산 뉴스에 게재)





## KOREA IP NEWS

※제트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 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 ①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 신청하라

| 한국특허청 (2020.2.24)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 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 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하여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작통상품 품작마!

| 한국특허청 (2020.3.23)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하여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작통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자가 작통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작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작통 게시물 차단에 성공하였다.

### ③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 한국특허청 (2020.5.8)


리뷰패션업계, 생활용품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나,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모방제품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 분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 어렵고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디자인 침해 형사소송은 평균 6.5개월, 디자인 침해금지청구 소송(1심)은 12.4개월이 걸리고(2018년 법원행정처), 디자인 침해를 당한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8,000만원 정도다. 디자인 침해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디자인 권리자는 소송 실익이 적어 침해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악용하여 디자인 모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디자인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돕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분야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있다. 디자인 분쟁의 조정 성립률(46%)은 특허(31%), 상표(36%)에 비해 높아 제도운영의 실효성도 높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상품형태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좀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특허청, 상품형태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증가에 적극대응할 계획

| 한국특허청 (2020.6.22)

최근, L세대 (Luxury-Generation) 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족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조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유형을 보면 상품 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가 가족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 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File No.134

## 한국의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한국 특허심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진술로 심리를 진행하는 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허청이 소재하는 대전 이외의 지역, 특히 서울에 당사자 및 대리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TV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원격 영상구술심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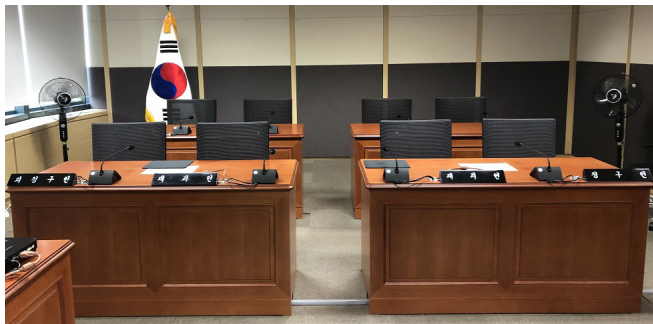
### 1. 원격 영상구술심리의 진행

원격 영상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대전) 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을 TV회의실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판합의체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에 출석하고 당사자 등의 심판관계자는 심판정 또는 영상심판정 (서울)에 출석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심판관계자 전원이 영상심판정에 출석합니다) 영상구술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상심판정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참석자의 확인이나 구술심리 진술요지서를 스크린에 투영하는 등 기기조작 및 심판정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격 영상구술심리 대상 사건은 (1) 한쪽당사자 또는 양당사자가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2) 양당사자의 대리인이 없는 사건, (3) 침해소송으로 연결되는 사건 등이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구술심리를 심판정(대전)에서 진행하고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심판합의체의 사건 지휘가 용이한 사건은 원격 영상구술심리 대상이 됩니다.

### 2. 영상심판정의 구성

서울의 영상심판정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1) 청구인, 피청구인석, (2) 증인 및 심판사무관석과 정면 좌측에 대전 심판합의체의 영상이 투영되는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고, 정면 우측에는 구술심리 진술요지서가 투영되는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 청구인석(좌), 피청구인석(우)



(2)증인석(좌), 심판사무관석(우) 및 심판합의체 영상이 투영되는 디스플레이

### 3. 원격 영상구술심리 관련 통계

아래 통계와 같이 구술심리 전체건수 중, 원격 영상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도입 이후 증가추세입니다. 현재 원격 영상구술심리는 상대적으로 상표사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허분쟁보다 상표분쟁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술심리 건수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전체)	633	646	590	646	530
건수(영상)	105	189	248	272	291
비율	16.6	29.3	42.0	42.1	54.9

이와 같이 원격 영상구술심리는 분쟁 당사자가 특허청이 소재하는 대전까지 이동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라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KIM,HONG&ASSOCIATES) 장만철 대표변리사,  
1984년 인하대학 항공학과 졸업, 1985년 특허청 입청, 1999년 요코하마국립대학 졸업(석사), 2009년~2012년 주일 한국대사관 특허관, 2013년~2016년 특허법인원전 변리사, 2017년부터 현직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키시 히로아키 전 부소장)



File No.135

## 한국의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해



최근,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허위표시를 하면 허위표시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허위표시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각 권리마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특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한국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표시

한국 특허법에는 특허표시에 대해 물건의 특허발명일 경우에는 그 물건에 '특허' 및 그 특허번호를 표시, 또는 특허출원 중일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중)' 및 그 출원번호를 표시, 물건에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3조)

또한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은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24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

###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특허청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이하, 지침이라함) 에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1)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 (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 (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2)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3)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4)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대해 지재권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5)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예: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표시를 하는 경우)
- 6) 지재권 출원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표시를 하는 행위

### 3. 한국에서의 지재권 표시방법

지침에서는 아래의 표시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류	표시방법
물건의 등록특허	특허 제10-000000호
방법의 등록특허	방법특허 제10-000000호
등록상표	상표등록 제40-000000호
등록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00000호
물건의 특허출원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호
방법의 특허출원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호
상표출원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호

또 한국은 2017년에 인터넷 특허표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에 '특허 +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특허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허번호 삭제나 추가가 어려우나 인터넷 특허표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단속은, 지침에 따르면 1, 2회 적발시까지는 적발사항 지침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회 적발시에는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 허위표시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누구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5. 마지막으로

한국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본인의 특허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특허표시 유무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표시는 권리행사가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특허표시를 할 경우, 허위표시는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PG

〈이번 호 해설자〉 특허법인 무한 천성진 대표변리사,  
1994년 변리사시험 합격 (수석), 1995년 서울대학 공과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5년~1999년 삼성전자 연구원 근무, 2000년~2002년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2002에 특허법인 무한을 공동설립, 현재 특허법인 무한 대표변리사, 한국정보공학회, 한국변리사회 (KPAA), AIPPI, APAA활동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키 히로야키 전 부소장)